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6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11. 6.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원고 주장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2018. 4. 2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가. 원고는 2017. 3. 10. 남편인 B로부터 [redacted]시 C 답 939㎡와 D 답 3,776㎡의 지분 2,911/4,5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789,772,807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7,642,040원, 지방교육세 2,369,310원, 농어촌특별세 1,579,540원을 신고한 후, 2017. 3. 20.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 31,590,8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4. 25. '원고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B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의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와 B는 부부로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이하 '자경농민 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만을 자경농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도 자경농민으로 보았으나, 2014. 8. 20.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주거지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B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가 2011. 10. 31. 각자를 세대주로 하여 [redacted]시 E에 각각 주민등록을 하여 서로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B가 부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나 B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와 B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제8조에서 주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 등에게 주민등록을 수정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재판장 판사 변민선

판사 김성겸

판사 정윤현